#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임종득・김정재・송언석

김상훈 • 이상휘 • 서천호

권성동 · 강대식 · 김형동

유용원 · 이인선 · 구자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
	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
	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
	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
	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
	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